

## PL시행후 각계반응

2년 6개월의 긴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 7월 1일부터 PL법이 시행되었다. 아직까지 PL소송이라고 할 만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각 PL상담기관으로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긴 유예기간은 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 수입업체들은 아직까지 PL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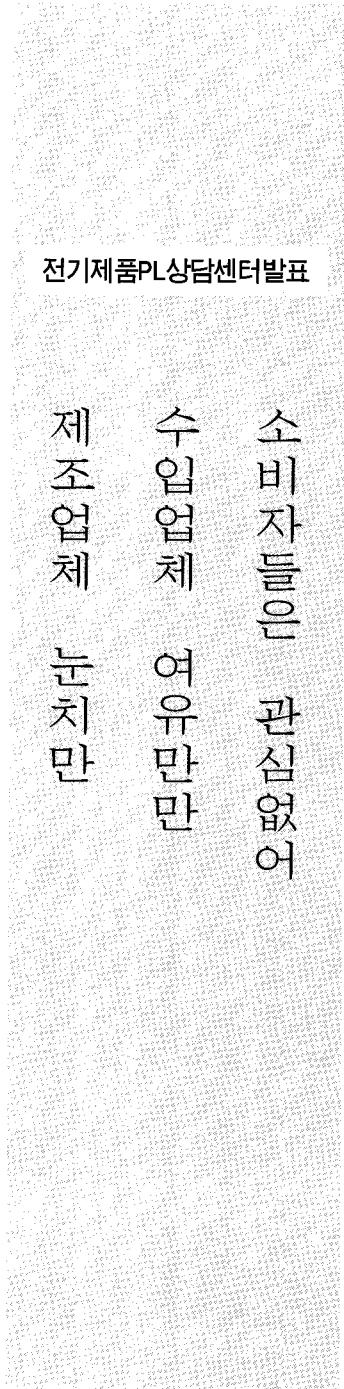
진흥원 산하의 전기제품 PL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동안 약 40여건의 상담을 실시한 결과 실제 사고관련 상담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PL법 시행후 폐생될 문제나 애매한 법해석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진흥원 산하의 전기제품 PL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상담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조업체, 주의 · 표시사항 문의 가장 많아

관련업체들이 PL법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PL법 시행에 긴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PL법 대응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PL상담센터에 따르면 제조업체  
의 경우 사용설명서를 비롯하여 표  
시, 주의사용문구에 대한 문의가 가



#### 전기제품PL상담센터발표

소비자들은 관심 없어  
수입업체 여유만만  
제조업체 눈치만

장 많은 비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경고, 지시사항 작성의 어려움 ▷ 제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 경고, 지시사항 라벨을 붙일 공간 부족 ▷ 포장재 및 제품 모두에게 표시사항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 경고, 지시사항을 완벽하게 작성할 때 제품의 단점이 노출되어 판매감소 우려 등이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업체 단독으로 경고, 주의사항을 작성하는데 애로 및 불안감을 나타내어 주의·표시사항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6개월이라는 유래없이  
긴 유예기간을 거친 후 PL법이 시  
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  
자체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법적용 대상인 공급된 제조물에 대한 정확한 시점 ▷ 법률의 소멸시효, 제품의 내구연한에 대한 문의 등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나 PL법에 대해 이해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대형유통점 제조물책임 부당 전가  
하는 불공정 계약 요구하기도

PL법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배상청구가 쉬워져 소비자권익이 향상, 제조물의 안전성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 등 많은 장점이 있

## PL법 영문판 홍보부족으로 존재사실 몰라 전기제품 제조업체 지시표시사항 작성 애로 대형유통점 책임전가성 계약 요구

는 반면 그 부작용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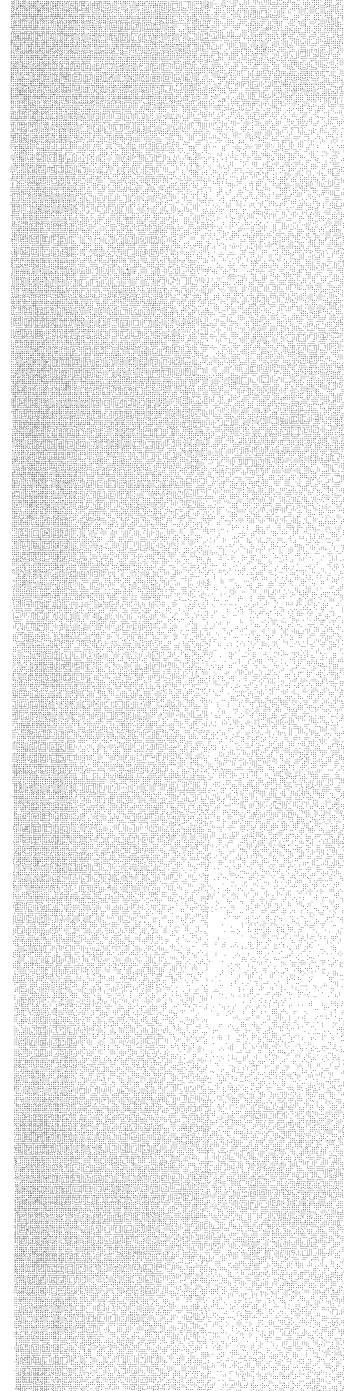
PL법 시행으로 인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도 PL 소송의 책임주체가 되자 국내 대형유통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제조업체에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한국전기제품진흥원, 산자부, 중소기업청, 한국PL센터 등 많은 기관에서 PL법에 대한 자료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L법에 대한 자료요청도 심심찮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 PL법에 대한 홍보가 유예기간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다.

### 수입업체, 구상권 최고의 관심사

전기제품 PL상담센터에 따르면 수입업체는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긋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한다. 문의건수나 상담내용 등도 제조업체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단순한 편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가 사전예방적 차원의 문의나 상담이 주를 이룬다면 수입



업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에 대한 구상권 문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전과는 달리 수입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 계약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 PL법 영문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PL영문판은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홈페이지(www.sobija.go.kr)에서 다운로드를 하거나 진흥원 산하의 전기제품 PL상담센터(☎ 02-579-3291)에서 구할 수 있다.

### 소비자, PL법 인식 미흡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피해관련 상담은 없었지만 제품결함에 관한 문의는 가끔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제품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PL법이 적용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상담결과 나타났다.

PL법 시행후 한 달이 경과되었지만 제조·수입업체, 소비자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과 PL법에 대비할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